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장의
----------------	--------------

제 43호 2015. 4.24(금)

고 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고시.....1
-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3

공 고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 공고5
-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공고8
-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공고15
-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공고34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9

남원시 고시 제2015-20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남 원 시 장

2015년 4월 24일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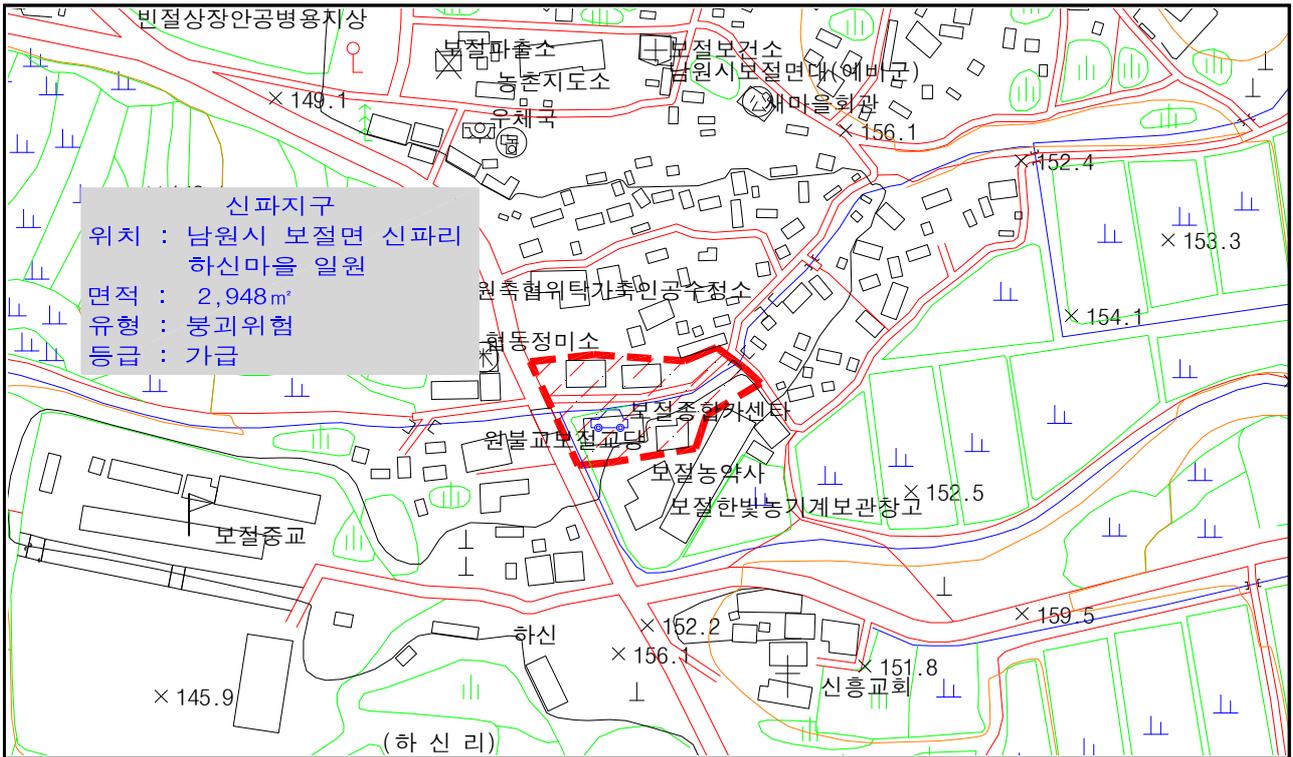
지구명	위 치	지정 내용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자)
		유형	등급	면적(km ²)		
계	2개지구	침수 : 1개소 붕괴 : 1개소		0.153		
신파지구	남원시 보절면 신파리 961 일원	침수위험	가	0.003	공사완료에 따른 위험요인 해소	(2010.5.6.)
조산지구	남원시 조산동 581 일원	붕괴위험	나	0.15	공사완료에 따른 위험요인 해소	(2012.3.29.)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063-620-6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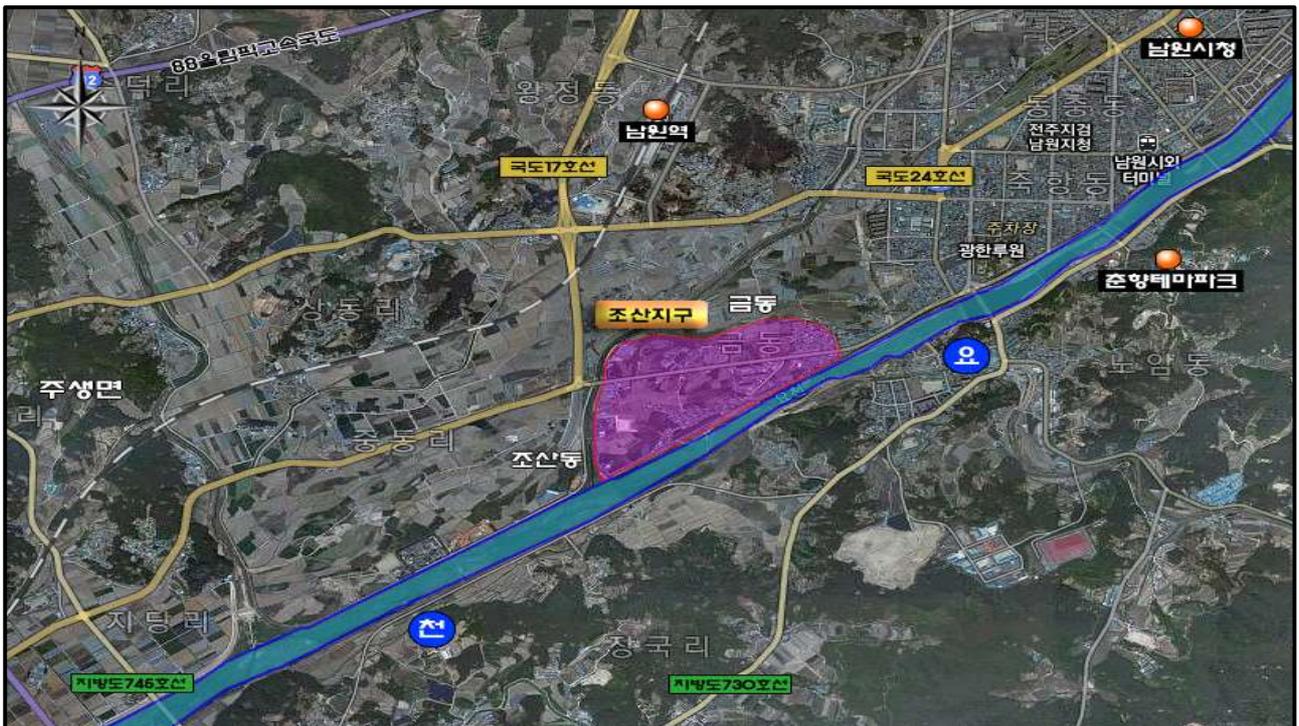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도면 각 1부(따로붙임). 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위치도

□ 신파지구



□ 조산지구



남원시 고시 제 2015 - 21 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에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및 망실기준점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점수: 총14점 (지적도근점: 14점설치)

- 지적도근점 성과고시 : 14점

나. 고시내용: 별첨(수지면 고평리 일원)

다. 성과보관장소: 지적서고

2015. 04 . 24 .

남 원 시 장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내역(수지 고평)

일련 번호	구 분	기준점명 및점번호	좌 표		소 재 지	측 량 년월일	성과보관 장 소	비 고
			X	Y				
1	도근점	11027	211188	248675.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산52번지	2015.03.18	지적서고	신설
2	도근점	11028	211099.3	248707.9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산45번지	2015.03.18	지적서고	신설
3	도근점	11029	211006.9	248803.4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산45번지	2015.03.18	지적서고	신설
4	도근점	11030	210918.6	248788.7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산45번지	2015.03.18	지적서고	신설
5	도근점	11031	210830.4	248738.5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산45번지	2015.03.18	지적서고	신설
6	도근점	11032	210762.2	248745.5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산45번지	2015.03.18	지적서고	신설
7	도근점	11033	210768.3	248789.7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산45번지	2015.03.18	지적서고	신설
8	도근점	11034	210890.9	248929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산45번지	2015.03.18	지적서고	신설
9	도근점	11035	210806.1	249009.5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산45번지	2015.03.18	지적서고	신설
10	도근점	11036	204723.7	236815.1	남원시 수지면 고평리산104-1번지	2015.03.18	지적서고	신설
11	도근점	11037	204637	236843.5	남원시 수지면 고평리산103-1번지	2015.03.18	지적서고	신설
12	도근점	11038	204452.1	236840.6	남원시 수지면 고평리산102-4번지	2015.03.18	지적서고	신설
13	도근점	11039	204393.1	236893.8	남원시 수지면 고평리산102-4번지	2015.03.18	지적서고	신설
14	도근점	11040	204291.3	237119.9	남원시 수지면 고평리산102-3번지	2015.03.18	지적서고	신설

남원시 공고 제2015-55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15년 4월 24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사업명	위치	시설명	등급	노선번호	사업구간	사업량	착수일	시행청	비고
							준공예정일		
조산 중로 개설(2구간)	남원시 조산동	도로	중로	2-16	조산동 969 ~ 조산동 539-1	L=120m B=15m	2015. 5	남원시	
							2017. 12		
			중로	3-10	조산동 529-1 ~ 조산동 539-1	L=241m B=12m	2015. 5	남원시	
							2017. 1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5. 열람기간 : 도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62)

7.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종로 2-16호선

구 분	위 치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 고
	소재지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명세	
1	남원시 조산동	539-1	답	763	370	남원시					
2	남원시 조산동	538-3	답	93	93	남원시					
3	남원시 조산동	542-1	전	405	405	남원시					
4	남원시 조산동	543-33	대	237	237	남원시					
5	남원시 조산동	543-36	도	26	26	남원시					
6	남원시 조산동	543-13	대	63	68	남원시					
7	남원시 조산동	543-34	대	54	54	남원시					
8	남원시 조산동	581-52	도	11.4	2.0	국(건설부)					
9	남원시 조산동	581-53	도	43.8	43.8	국(건설부)					
10	남원시 조산동	581-9	도	57.4	44.5	국(건설부)					
11	남원시 조산동	612-1	대	31.8	31.8	남원시					
12	남원시 조산동	608-1	대	79.7	79.7	남원시					
13	남원시 조산동	611-1	대	71.9	71.9	김*우	남원시 조산동 ***				
14	남원시 조산동	609-1	도	95.1	95.1	남원시					
15	남원시 조산동	606	도	39	5	남원시					
16	남원시 조산동	610-1	대	87.5	87.5	양*용	남원시 조산동 ***				
17	남원시 조산동	969-26	도	16.7	16.7	국(건설부)					
18	남원시 조산동	969-27	도	4.9	4.9	국(건설부)					
19	남원시 조산동	969	도	171.0	3.0	국(건설부)					
계		총 19필지		2,351	1,733.9						

□ 종로 3-10호선

구 분	위 치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 고
	소재지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명세	
1	남원시 조산동	528-1	도	272	1	남원시					
2	남원시 조산동	544-1	도	358	67	남원시					
3	남원시 조산동	529-1	답	406	193	남원시					
4	남원시 조산동	528-3	도	10	10	남원시					
5	남원시 조산동	530-1	답	737	737	남원시					
6	남원시 조산동	531-4	답	414	414	남원시					
7	남원시 조산동	531-2	도	159	33	김*옥	남원시 남원읍 조산리 ***				
8	남원시 조산동	532-2	도	40	19	남원시					
9	남원시 조산동	532-4	답	466	445	남원시					
10	남원시 조산동	538-1	답	843	843	남원시					
11	남원시 조산동	539-1	답	763	247	남원시					
계		총 11필지		4,468	3,009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중로 2-16호선

구분	위 치		물건명	상황및구조	편입수량	단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소재지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명세	
1	남원시 조산동	610	주택	목조스레트	32.34	m ²	양*용	남원시 농원길 ***				
			주택 (방,창고)	브릭스레트	24.42	m ²						
			가추	목조스레트	9.66	m ²						
			창고	브릭스레트	8.58	m ²						
			담장 (블럭)		5.3m	m						
			콘크리트 포장		33	m ²						
			가름 보일러		1	식						
			연탄 보일러		1	식						
			처마	목조스레트	10.36	m ²						
			대문	지붕포함	1	식						
2	남원시 조산동	970-3	화장실 및 창고	브릭스레트	39	m ²	양*용	남원시 농원길 ***				
			동산 이전비		1	식						
3	남원시 조산동	608 581-9 543-34	주택	목조합석스 레트	28.5	m ²	김*우	남원시 농원길 ***-*				
			창고 1	브릭합석스 레트	8.75	m ²						
			가추	브릭합석스 레트	5.4	m ²						
			창고 2	브릭합석스 레트	2.89	m ²						
			담장 (블럭)	L=3.9m	3.9	m						
			장독대		1	식						
			수도간		1	식						
			대문		1	식						

남원시 공고 제2015-574호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1. 제정이유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및 「도로법」 전면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정비하여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로 시민들의 행복한 안전권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제3조제1항제4호)
 -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조례 제정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14일 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남원시 건설과
-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7)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건설과(☎063-620-65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15 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건 설 과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및 「도로법」 전면개정
 에 따른 조례 조문 정비하여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로 시민들의 행복한 안
 전권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제3조제1항제4호)
 -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로법」 및 「지방자치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4. . ~ 2015. 5.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9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 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남원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부과징수”를 “부과·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과징수”를 “부과·징수”로,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을”을 “「지방자치법」 제140조를”로 한다.

제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139조에 따라----- ----- ----- ----- ----- ----- -----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p> <p>② 도로의 무단 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p> <p>2. “도로의 무단 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p>
<p>제3조(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p>	<p>제3조(과태료) ① <u>남원시장</u>----- ----- ----- ----- -----</p>

과·징수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② 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② -----부과·징수-----

-----.

③ -----부과·징수-----

-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

제4조(시행규칙) -----시행에-----

-----.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2015-575호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정이유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추가, 점용료 분할납부 규정 마련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 주요내용

- 가. 점용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3조의2제6호 및 제7호)
 -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시설의 경우
- 나. 점용료 분할납부 규정 마련(안 제8조제2항)
 - 점용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4회 이내 분할 징수 규정 마련

3. 조례 제정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14일 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남원시 건설과
 -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7)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건설과(☎063-620-65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15. 4. .
 제출자: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건설과장

1. 개정이유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추가, 점용료 분할납부 규정 마련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점용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3조의2제6호 및 제7호)
 -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시설의 경우
- 나. 점용료 분할납부 규정 마련(안 제8조제2항)
 - 점용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4회 이내 분할 징수 규정 마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4. . ~ 2015. 5.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를 “「도로법」 제 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으로, “부과·징수에 관하여”를 “부과·징수에”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사람”을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비·햇빛가리개 등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제3조 제1항 중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을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算定)”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제3항 본문 중 “산정에 있어서”를 “산정은”으로, “직경”을 “지름”으로, “이상”을 각각 “미만”으로, “이상인 경우에는 1미만인 단수는”을 “미만인 경우에

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를 “점용료를 산정할 경우”로 하고,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인접”을 “다만,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사업에 대하여는”을 “사업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비영리사업”을 “비영리사업은 전액 면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열수송시설”을 “열수송시설,”로,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설치하는 사업”을 “설치하는 사업은 2분의 1 감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해”를 “재해,”로,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경우”를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닌 경우”를 “아닌 경우는 전액 면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경우”를 “경우는 10분의 1을 감면”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행자의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는 2분의 1을 감면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시설의 경우는 전액 면제

제3조의2제2항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

제4조 제1항 중 “2개년도”를 “2년”으로, “경우로서”를 “경우에는”으로,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를 “증가할 때의 해당 연도”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 한”을 “경우에 한정”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도로법」 제84조”를 “시장은 「도로법」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에 대하여”를 “기간은”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미만인 때”를 “미만인 경우”로, “부과 징수한다.”를 “부과·징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상인 때”를 “이상인 경우”로,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를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9조 제1항 중 “징수하고자 할”을 “징수할”로, “발부”를 “발급”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을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 된 점용료의 징수는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 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 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 지국, 교통량 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직경 0.1m이하	길이 1m	1년	200
		직경 0.1m초과 0.2m이하			400
		직경 0.2m초과 0.4m이하			850
		직경 0.4m초과 0.6m이하			1,2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1,650
		직경 0.8m초과 1.0m이하			2,050
		직경 1.0m초과 2.0m이하			3,100
		직경 2.0m초과 3.0m이하			5,200
		직경 3.0m초과			7,25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지 중 정 착 장치(어스 앵커), 압 거,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직경 0.1m이하	길이 1m	1년	300	
	직경 0.1m초과 0.2m이하			600	
	직경 0.2m초과 0.4m이하			1,250	
	직경 0.4m초과 0.6m이하			1,8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2,500	
	직경 0.8m초과 1.0m이하			3,100	
	직경 1.0m초과 2.0m이하			4,600	
	직경 2.0m초과 3.0m이하			7,750	
	직경 3.0m초과			10,850	
3. 간판(돌출 간판을 제외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적용)	표시면적 1㎡	1일	150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	1년	20,700	
	돌 출 간 판	표시면적 1㎡	1년	9,900	
	사 설 안 내 표 지	1개	1년	17,25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아 치	도로횡단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m ²	1년	41,400
	그 밖의 것				20,7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 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m ²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진입로·출입로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m ²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1조제1항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m ²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7. 노점·자동판매기· 현금 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금액
	노 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현금자동입출금기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50
	기 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 0.025을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 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는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 2]<개정 2013.5.10.>

점용료 조정산식 (제4조제1항 관련)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사한 것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이상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까지 산정한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비·햇빛가리개 등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算定)-----.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산정은-----
-----지름-----
-----미만-----
-----미만인 경우에는-----.

④ 점용료를 산정할 경우-----

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제3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 공급시설, 전기 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다만,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

제3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사업은-----
 -----.

- 1.-----

 -----국토교통부령
으로-----

 -----비영리사업은 전액 면제
- 2.-----

 -----열수송시설,-----
 -----국토교통부령으로-----
 -----설치하는 사업은 2분의 1

3.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
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해양부령에서 정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
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
리목적이 아닌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
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
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감면

3. 재해,-----

-----국토교통부령-----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에
서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4.-----

-----아닌 경우는 전액 면
제

5.-----

-----경우는 10분의 1을
감면

6. 통행자의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
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는 2분의 1을
감면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
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 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4.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시설의 경우는 전액 면제

② 삭 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
-----2년-----
---경우에는-----

-----증가할 때의 해당
연도-----

로 한다.

②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법」 제84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따라-----

-----.

② -----

-----경우에 한정-----

-----.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도로법」 제63조-----

-----.

② -----

-----기간은-----

-----.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신 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① -----
-다음 각 호-----.

1. ----- 경우-----
-----부과·징수
2. ----- 경우-----
-----개시
후 3개월-----징수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

-- 징수할 -----

발급-----

② -----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2015-576호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도로에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제한하는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목 변경 - 「남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완화(안 제6조 및 별표 4)

-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은 교차로 영향권과 교차로 주변의 변속 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를 합산하여 산정해 왔으나, 교차로 영향권만 연결 허가 금지구간으로 이해하는 등 혼란의 소지가 있어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을 물리적 교차로 부분 및 변속차로 부분과 제한거리로 하고, 제한거리를 완화함.

다.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완화(안 제8조 및 별표 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시설별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완화함.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조례 제정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14일 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15. 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건 설 과 장

1. 개정이유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도로에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제한하는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목 변경 - 「남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완화(안 제6조 및 별표 4)

-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은 교차로 영향권과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를 합산하여 산정해 왔으나, 교차로 영향권만 연결허가 금지구간으로 이해하는 등 혼란의 소지가 있어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을 물리적 교차로 부분 및 변속차로 부분과 제한거리로 하고, 제한거리를 완화함.

다.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완화(안 제8조 및 별표 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시설별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완화함.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4. 24 . ~ 2015. 5. 14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64조제3항”을 “「도로법」 제52조”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절차, 설치기준, 그 밖의”를 “연결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차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를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안내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9.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10.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제13조”를 “제23조제2항”으로, “도로·통로 및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 등”)”을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로, “경우에 이를”을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로 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 등”을 “도로와 다른 시설”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제4조 제2항제3호 중 “경우만 해당된다)”를 “경우에만 해당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등이 포함될 것)”를 “등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연결공사중”을 “연결공사 중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요령”을 “작성요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을 “시설을 연결하려면”으로,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하는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이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변경신청서”를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붙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 허가기준)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면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 허가 및 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연결허가구간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붙인다)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구간은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제2호·제4호·제5호”를 “제1호·제2호·제5호”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

의 연결허가 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을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곡선반경”을 “곡선반지름”으로, “시거”를 “시거(視距)”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를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허가”를 “구간은 연결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차로에 대하여”를 “교차로는”으로, “교차로 영향권”을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3호가목 중 “제2조제1항제1호 상의”를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초래하는”을 “주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교량”을 “다리”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설치되어 이를”을 “설치되어”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동일한 강도”를 “같은 세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일하거나”를 “같거나”로 한다.

제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하여야 한다.”를 각각 “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테이퍼와 사업부지”를 “사업부지”로, “곡선반경 15미터”를 “곡선반지름이 12미터”로, “처리하여야 한다”를 “처리할 것”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 제5호 중 “동일하거나”를 “같거나”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호 중 “곡선반경이 15미터”를 “곡선반지름이 12미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제1호 중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9호에 따른 길어깨(이하 “길어깨”라 한다)”를 “길어깨”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연결하여야 한다.”를 “연결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설치로 인하여”를 “설치로”로,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를 “설치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으로, “측구”를 “측구(側溝)”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전단 중 “오수”를 “더러운 물”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이 경우”를 “다만,”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전면”을 “앞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드레일”을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을 “인공구조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30센티미터”를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로,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부착하거나”를 “붙이거나”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설치하는 때”를 “설치하는 경우”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본문 중 “동등한”을 “같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25센티미터”를 “0.25미터”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가드레일”을 “방호울타리”로,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할 것”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가드레일”을 “방호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을 “설치되지 않은”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한다.

제13조 중 “시설공사에 있어서”를 “시설공사 중에서”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곡선구간의 곡선반경”을 “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0.9.15>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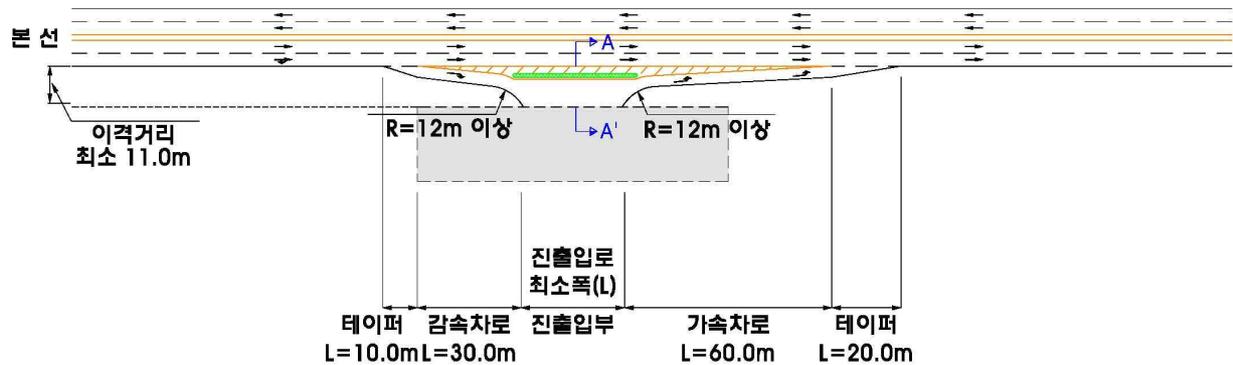
도 면 명	작 성 요 령
위 치 도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 시설물의 위치 표시
평 면 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 끝선, 길어깨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분리대, 그 밖의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중 단 면 도	세로 방향 1/1,200 이상, 가로 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 [측점(測點)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 단 면 도	측점마다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 폭 양쪽으로 연결 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 조 물 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 대 공 사 도	변속차로 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별표 2] <개정 2014.1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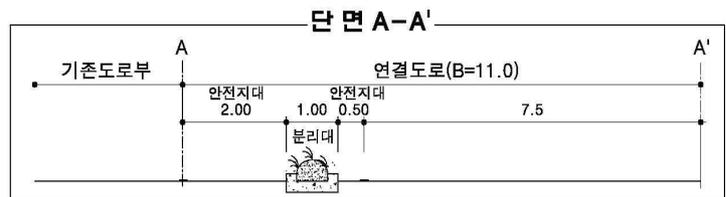
변속차로 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

1.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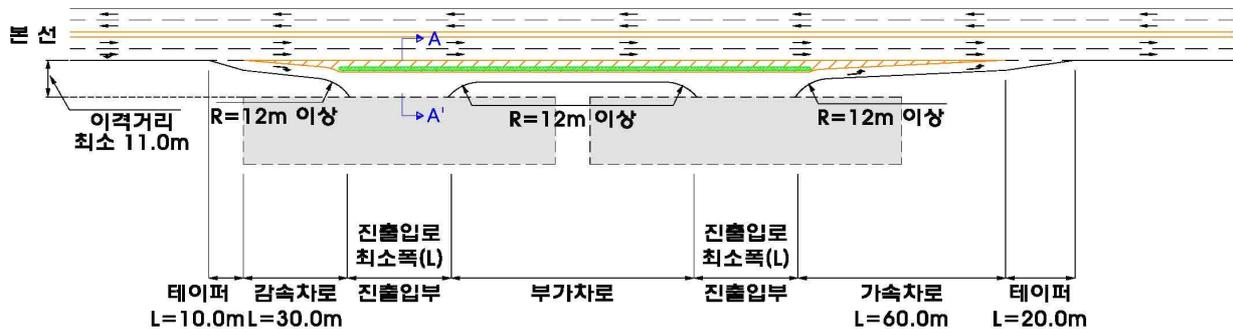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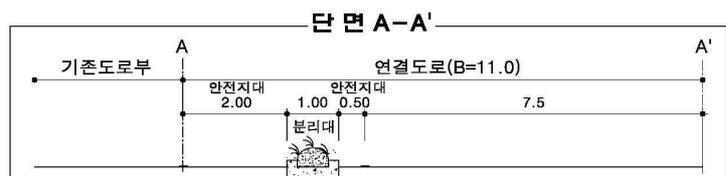
■ 사업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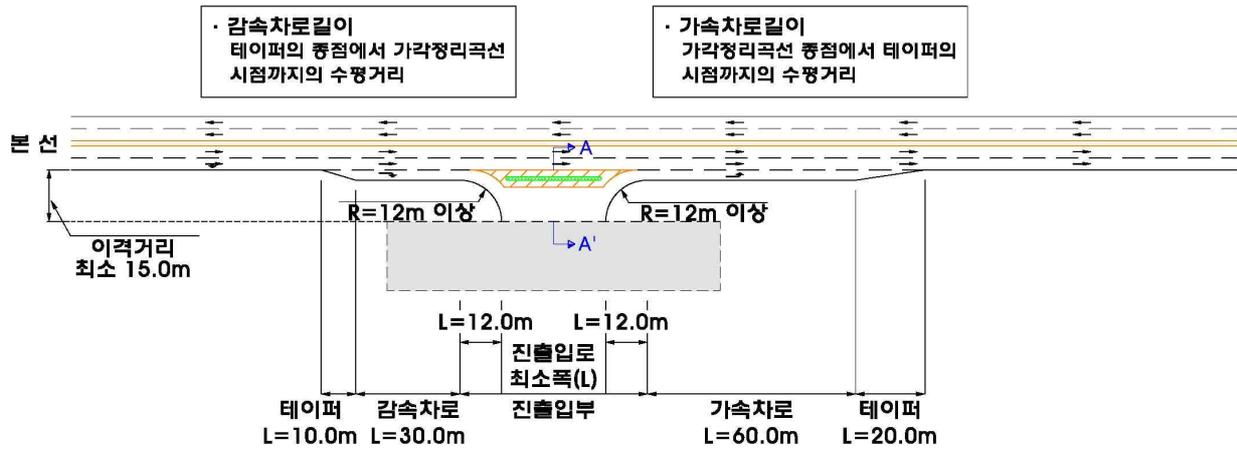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 사업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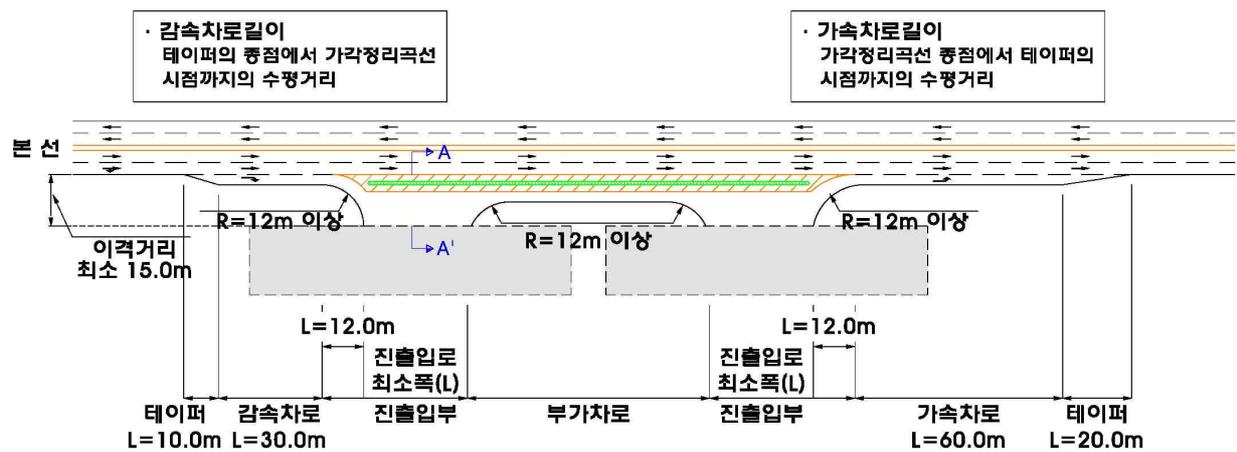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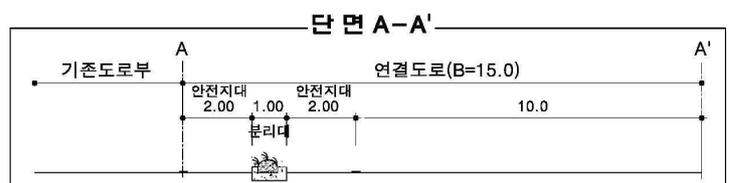
■ 사업부지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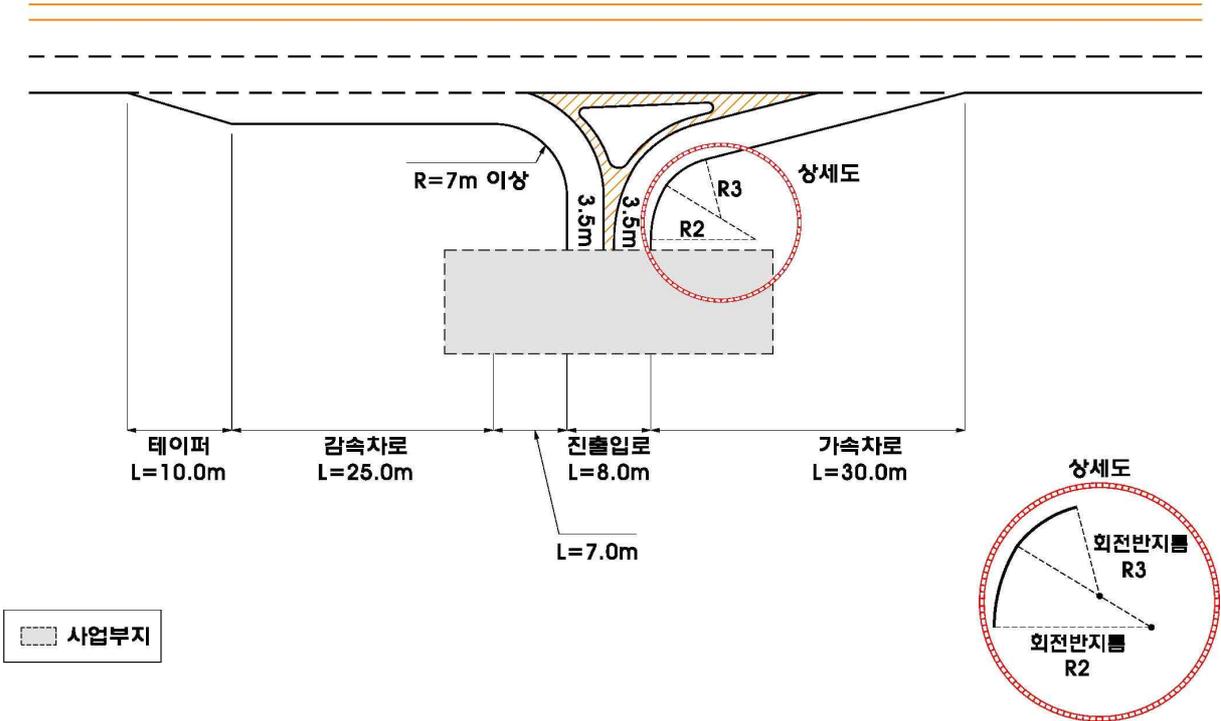


■ 사업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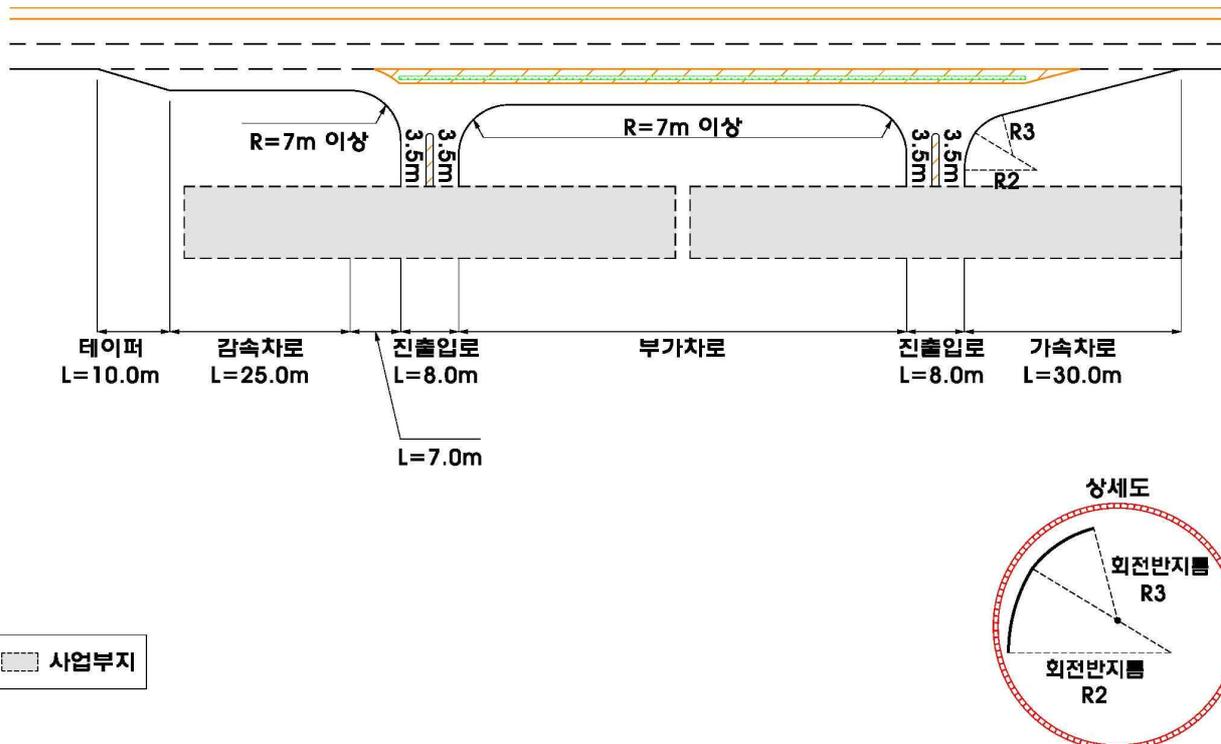


3. 평행식 감속차로와 직접식 가속차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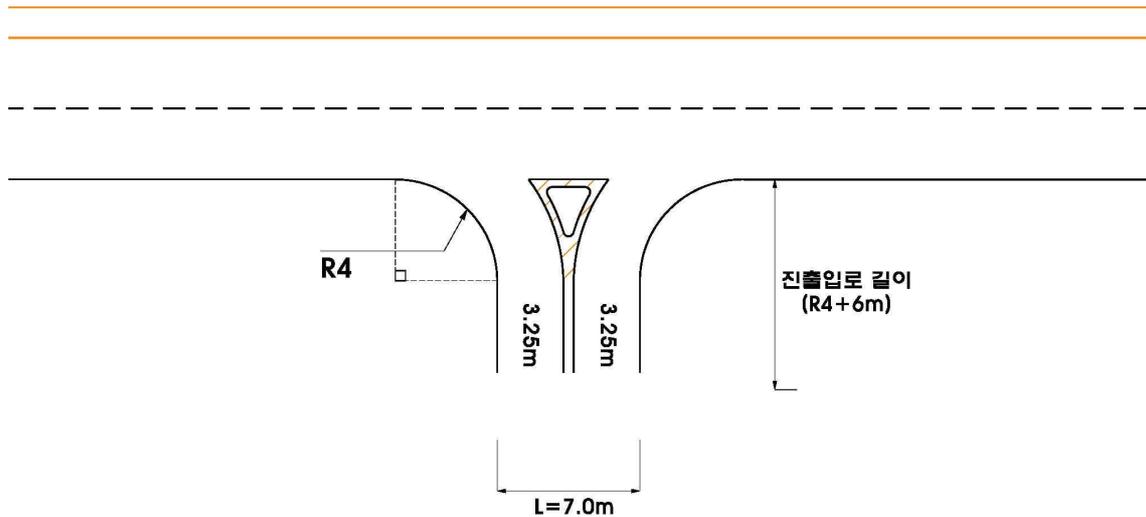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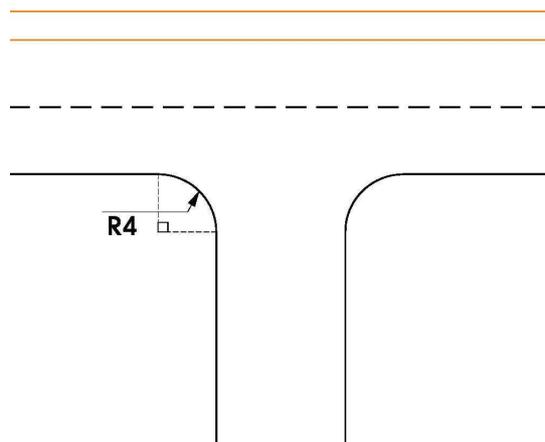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4. 도로의 모서리곡선화를 통한 변속차로 대체(代替) 설치
 가. 곡선 반지름(R_4) 5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곡선 반지름(R_4) 3미터 이하인 경우



비고

1. 위 표 중 R은 곡선반지름,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m)로 한다.
2. 사업부지와 변속차로 등의 연결지점은 부지경계선 중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위 표 중 이격거리는 본선 차도(길어깨를 제외한다)의 바깥쪽 차선과 사업부지 간의 최소 거리를 말한다.
4. 위 표 중 제1호와 제2호에서 진출입로 최소 폭(L)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 20m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0m로 한다.
 - 가. 별표 5 제1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사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 나. 별표 5 제2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31대 이상), 사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 5. 위 표 중 제3호가목과 제4호가목은 분리대를 교통섬의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6. 위 표 중 제3호에서 곡선 반지름 R_2 , R_3 의 크기는 가속차로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며 그 최소 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가속차로의 길이(미터)	R_2 (미터)	R_3 (미터)
30	10	7
25	7	5
20	7	5

[별표 4] <개정 2014.12.29.>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제6조제3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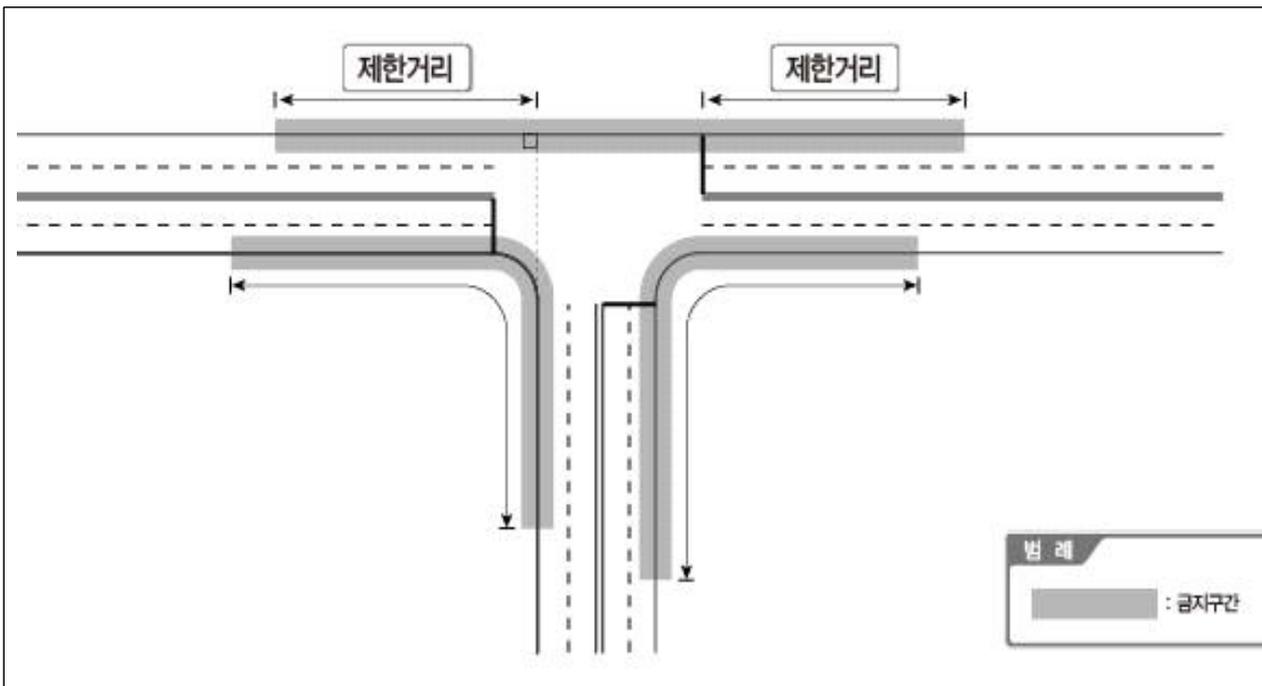
1.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가 교차하는 물리적인 영역과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감속차선의 경우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산정하고, 가속차선의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50	25	40
60	40	60
70	60	85
80	70	100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2.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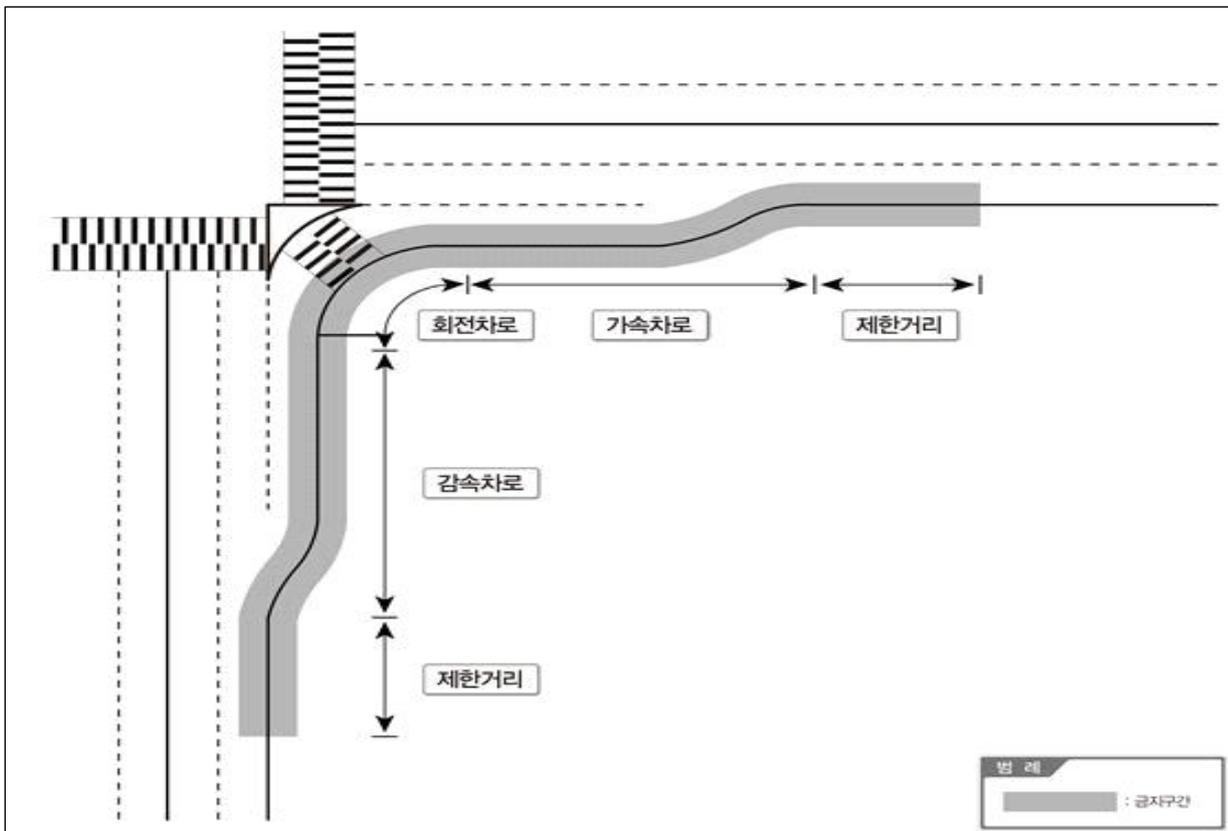
나.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속·감속차로 전방·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10	20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3.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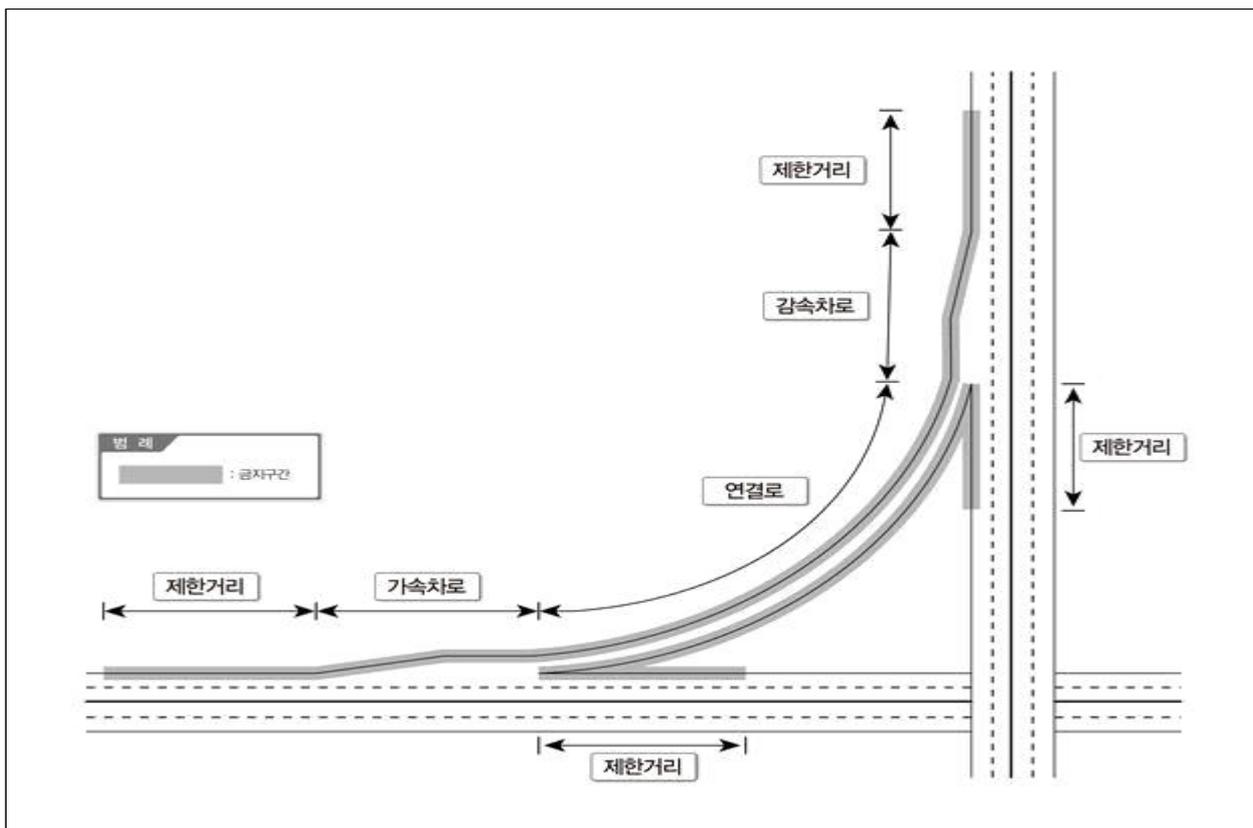
나.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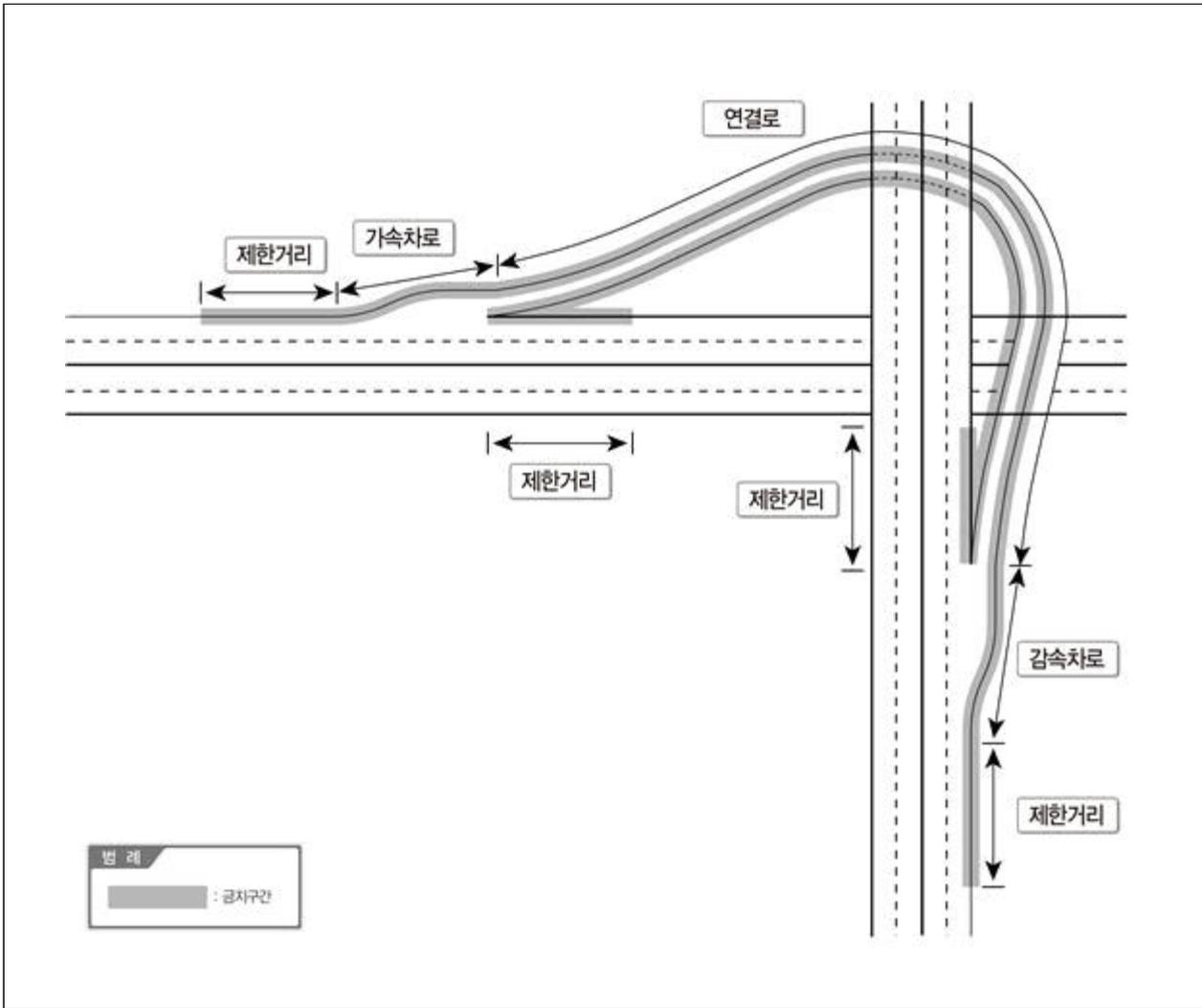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60	45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별표 5] <개정 2015.00.00.>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나. 휴게소·주유소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라. 사도·농로·마을 진입로 또는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교 통용 통로 등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20대 이하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바. 주차장·건설기계 주기장·운수시설· 의료시설·운동시설 ·관람시설·집회시 설 및 위락시설 등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사. 공장·숙박시설· 업무시설·근린생활 시설 및 그 밖에 시 설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20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				
	(100가구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101가구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가구 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나. 휴게소·주유소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10 (10)	60 (40)	20 (20)
라. 사도·농로·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20 (15)	10 (10)	40 (30)	20 (20)

교통용 통로 등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11대 이상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바. 주차장·건설기계주기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사.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그 밖의 시설	2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21대 이상 5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5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100가구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신청안내

(뒷 면)

근거법률	<p>○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 61조제1항).</p> <p>○도로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64조제2항).</p>																			
처리절차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신 청 인</td> <td colspan="4" style="padding: 5px;">처 리 기 관</td> </tr>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신 청 서]</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현 지 조 사]</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검 토]</td> </tr>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발 급]</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허 가 서]</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결 재]</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r> </table>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	[접 수]	→	[현 지 조 사]	→	[검 토]	[발 급]	←	[허 가 서]	←	[결 재]	←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	[접 수]	→	[현 지 조 사]	→	[검 토]														
[발 급]	←	[허 가 서]	←	[결 재]	←	←														
유의사항	<p>○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p> <p>○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p> <p>○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p>																			

※ 작성방법

- | |
|---|
| <p>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p> <p>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p> <p>⑤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p> <p>⑦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p> <p>⑩란은 도로 노선번호를 적습니다.</p> <p>⑬란에는 수입인지를 붙입니다.</p> |
|---|

※ 신청안내

(뒷 면)

근거법률	<p>○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 61조제1항).</p> <p>○도로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64조제2항).</p>																			
처리절차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신 청 인</td> <td colspan="4" style="padding: 5px;">처 리 기 관</td> </tr>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신 청 서</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현지조사</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검 토</td> </tr>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발 급</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허 가 서</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결 재</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r> </table>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발 급	←	허 가 서	←	결 재	←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발 급	←	허 가 서	←	결 재	←	←														
유의사항	<p>○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p> <p>○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p> <p>○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p>																			

※ 작성방법

-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⑤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 ⑦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 ⑪란은 도로 노선번호를 적습니다.
- ⑬란에는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 신청안내

(뒷 면)

근거법률	<p>○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 61조제1항).</p> <p>○도로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64조제2항).</p>																			
처리절차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신 청 인</td> <td colspan="4" style="padding: 5px;">처 리 기 관</td> </tr> <tr> <td style="padding: 5px;">신 청 서</td>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접 수</td>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현지조사</td>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검 토</td> </tr> <tr> <td style="padding: 5px;">발 급</td>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허 가 서</td>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결 재</td>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td> </tr> </table>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발 급	←	허 가 서	←	결 재	←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발 급	←	허 가 서	←	결 재	←	←														
유의사항	<p>○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p> <p>○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p> <p>○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p>																			

※ 작성방법

-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⑤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 ⑦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 ⑪란은 도로 노선번호를 적습니다.
- ⑬란에는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u></p>	<p><u>남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제3조의 적용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u>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절차, 설치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도로법」 제52조----- ----- -----<u>연결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u>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정의) ----- -----<u>뜻은</u>----- -----</p>
<p>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u>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u>를 말한다.</p>	<p>1.----- ----- -----<u>차로</u>----- -----</p>
<p>2.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p>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u>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지 및 분리대</u> 등을 말한다.</p>	<p>3.----- ----- -----<u>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안내표지</u>----- -----</p>

4.·5. (생략)

6. “교차로 영향권”이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

4.·5. (현행과 같음)

<삭제>

7. (현행과 같음)

8.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9.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10.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

--제23조제2항-----

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변속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 시설 등(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의 설계도면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
- 2. 3. (생략)
- 4. 연결공사중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 5. 도로 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

출하여야 한다.

② -----도로와 다른 시설-----
-----붙여야-----

- 1. (현행과 같음)
- 2.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3.-----

---경우에만 해당 된다)

③ -----

-----.

- 1.-----

-----등을 포함한다)
- 2. 3. (현행과 같음)
- 4.연결공사 중의-----

- 5.-----

설물의 법정주차 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 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에게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 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결 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 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정한다

④ -----

-----작성요령-----
-----.

⑤ -----시설을 연결하
려면-----

-----신청하려는-----

-----해당 하는지-----
-----.

-----없으면 이에 따라
야-----.

⑥ -----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붙여야 한다)-----

<신 설>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 허가기준)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면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 허가 및 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연결허가구간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붙인다)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

 -----구간은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1호·제2호·제5호-----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곡선반지름-----

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단서 신설>

시거(視距)-----

2.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구간은 연결 허가-----
-----.

3.-----

-----교차로는-----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언-----
-----경우에는-----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① 변속차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①

---같은 세기-----

② 변속차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

-----같거나-----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

-----.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1. -----
-----할 것
2. ----- 할 것
3. -----
-----할 것
4. 사업부지-----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이 15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단서 신설>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9호에 따른 길어깨(이하 “길어깨”라 한다)의 바깥쪽에 연

-----곡선반지름이 12미터-----처리할 것.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같거나-----
-----설치할 것

제8조의2(부가차로) -----

-----.

- 1. 2. (현행과 같음)
- 3.-----
-----곡선반지름이 12미터-----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배수시설) -----

-----.

- 1.-----
-----길어깨-----

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의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형 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빗물이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안 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 폭 30센티미터 이

-----설치할 것

2.-----

-----연결할 것

3.-----

-----설치로-----

-----설치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側溝)-----

-----설치할 것

4. -----

-----더러운 물-----

-----않도록-----

-----설치할 것.다만,-----

상,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
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하
여야 한다.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
한 사업부지의 전면 등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
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
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분리대는 높이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
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제10조(분리대) -----

1.-----

앞면-----

-----설치할 것

2.-----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하
다),--인공구조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설치할
것

3.-----0.3미터(교통
섬은 0.12미터)-----
-----할 것

4.-----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삭 제

7.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
-----.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어깨가 보도로도 이용되는 경우에

-----않도록-----

-----설치할 것-----

5.-----

-----붙이거나-----

-----설치할 것-----

6. 삭 제

7.-----

----- 경우-----

-----할 것-----

제11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
-----.

1. -----

-----같은-----

-----할 것-----

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 등의 노면이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25센티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부대시설) -----

1. 가드레일 또는 낙석 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 조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

2.-----

-----방호울타리-----
-----할 것-----

3. -----
-----0.25미터-----
-----할 것-----

4.-----
-----방호울타리-----

-----할 것-----

제12조(부대시설) -----

1.방호울타리 -- -----

-----할 것-----

2. -----
-----같-----
-----은-----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 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변속차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되지 않은-----

--할 것

제13조(공사 시행) -----

----- - 중에서-----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